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부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이 시행 예정('25.7.22)에 따라,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

3. 주요내용

가. (지원범위) 공공요금의 범위를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제1항에 따른 '공공요금'으로 함

나. (지원대상) 공공요금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영업활동 여부,

매출액, 업종 등을 검토할 수 있음

다. (지원방식) 공공요금 지원은 직접지원, 차감, 환급 등의 방식을

적용할 수 있음

라. (지원절차)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개요, 지원

대상, 신청방법 등을 공고하여 지원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안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15(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 등) 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서 “공공요금”이란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을 말한다. 이 경우, 지원되는 공공요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② 법 제12조8제2항에 따른 공공 요금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.

1. 영업활동 여부
2. 매출액
3. 업종
4. 그밖에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은 공공요금의 납부 방식에 따라 직접지원 및 차감 또는 환급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요금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
1. 사업개요

2.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3. 제출서류, 지원절차

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요금의 종류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 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 신 설 >	<u>제4조의15(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 등) ① 법 제12조의8제1항에서 “공공요금”이란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을 말한다. 이 경우, 지원되는 공공요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한다.</u> <u>② 법 제12조8제2항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대상을 선정할 경우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.</u> <u>1. 영업활동 여부</u> <u>2. 매출액</u> <u>3. 업종</u> <u>4. 그밖에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은 공공요금의 납부 방식에 따라 직접 지원 및 차감 또는 환급 등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</u> <u>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요금 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</u>

1. 사업개요

2.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
3. 제출서류, 지원절차

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
요금의 종류에 따라 지원에 필요한
기준, 방법, 절차 등에 관한 세부
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	
연 락 처	(044) 204 - 7853